

1. 제정 이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 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경찰관과군검사의 의견제시·교환(안 제3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서식 등을 정함

나. 수사개시, 고소/고발에 관한 절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수사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의 처리 유형을 정함

2) 군사법경찰관은 진정한,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라. 출석요구와 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7조부터 제34조)

마. 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안 제35조, 제36조)

바.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안 제37조부터 제60조)

1) 체포·구속과 그 취소시 서식 및 절차

2) 압수·수색·검증 및 압수물의 환부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3) 증거보전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사. 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 복사 규정 정비(안 제61조, 제62조)

아. 사건의 종결(안 제63조, 제64조)

라.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66조)

군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세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제2편 협력

제3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교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 요청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교환한다.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호송,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5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수사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

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작성·통보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변호인임을 확인한 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9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건의 단위) 법 제13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심사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부대에 강제수사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2조(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고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 전 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하

여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 전 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 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 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

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작성·통보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고소·고발의 수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

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제16조(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78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수사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9조(고소·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0조(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하여야 한다.

제21조(변사자의 검시·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2조(검시·검증조서 등) ① 법 제264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

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의 검증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하는 경우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하는 경우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와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소속부대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5조(사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고위공직자 등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고위공직자 범죄 중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27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통보한다.

제28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29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0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계 및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피해자 이외의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32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라 기록한다.

제33조(실황조사)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34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를 작성·위촉한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영상녹화

제35조(영상녹화)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시작 시점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하여 조사를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3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

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구속

제37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신청한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8조(긴급체포)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39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촉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0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

고서에 따라 보고한다.

제41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2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군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43조(호송)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 부대나 경찰서, 수사부대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44조(체포·구속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제4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

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6 및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통보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작성·통보한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7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제48조(구속의 취소)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0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군검사의 동의를 받

아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를 작성·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49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를 작성·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를 작성·통보한다.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50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51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폐기·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폐기·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53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

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가) 환부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압수물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제49조 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순위·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압수물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56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제57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58조(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 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기타

제61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

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2조(수사서류 열람·복사) 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관리하는 수사부대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복사를 불허용

③ 수사부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수사부대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 수사부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편 군사경찰 수사의 종결 등

제63조(사건 이송)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수사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수사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64조(사건송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하여야 한다.

1. 기소의견 송치

2. 불기소의견 송치

가. 혐의없음

나. 공소권없음

다. 죄가안됨

라. 각하

마. 기소중지

바. 참고인중지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6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송치 결정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군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군검사에게 송부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

제5편 보칙

제67조(준용)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 및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리의 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00호, 2023. 0. 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의견요청서**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
2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군 번 (순 번)	
	주 거		소 속	
죄 명				
내 용				

비 고	
-----	--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군검사
제 목 : **의견서**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
2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군 번 (순 번)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	--

○○○수사단(대)장 성 명 ㉠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회피신청서

다음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성명 : 계급 / 군번 :
(직급 / 순번)
소속 : 생 년 월 일 :

2. 사건 번호

3. 회피 사유

4. 증빙 서류

0000.00.00.

신청인

성 명 인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주 요 진 행 상 황			
담 당 수 사 관	☎ 02-0000-0000		

※ (참고)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수사단(대)장

변호인 참여 신청서

일시	년 월 일			
대상자	구분	[] 피의자 [] 피혐의자 [] 기타()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관계	
	연령		전화번호	
	주소			
변호인	성명		전화번호	

※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사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조사 후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관련 내용은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준용됩니다.

○○○수사단(대)

제 0000-00000호0000.00.00.

수신 :
참조 :
제목 : **범죄인지서**

접수번호 :
사건번호 :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군번 : 주거 :
소속 : 등록기준지 :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접 수 번 호	
죄 명			
결 정 종 류			
주 요 내 용			
담 당 수 사 관	☎ 02-0000-0000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수사단(대)장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접 수 번 호	
죄 명			
결 정 종 류	1. 입건전조사 종결[] 2. 입건전조사 중지[] 3. 이 송 [] : 이송관서명(☎:전화번호) 4. 공람 후 종결 []		
주 요 내 용			
담 당 수 사 관	☎ 02-0000-0000		

※ (참고)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수사단(대)장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귀하

참 조 : 접수번호 :

제 목 :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촉탁한 수사/영장 집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진술인 등 인적사항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계급 : 주 거 :

소속 : 등 록 기 준 지 :

2. 수사사항/영장 집행 내용

2. 비고

검 시 조 서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는 0000.00.00. 군사법경찰관/리 계급 000을/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를 검시하다.

변 사 자	성명		성별		나이	
	계급		군번(순번)			
	소속					
	주소					
변사장소						
검시장소						
사체의 모양 및 상황						
변사년월일						
사인						
발견일시						
발견자						
의사(군요관)의검안및 관계자의진술						
소지품 및 유류품						
사체 및 소지품의 처리						
참여인						
의견						

이 검사는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명 (인)

검 증 조 서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000.00.00. 군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000외 0명에 대한 피의사건(사건 번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하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이 검사는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①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①

사 체 및 소 지 품 인 수 서

☐ 인 수 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주거			
사망자와의관계			

☐ 사 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성별		군번(순번)	
계급			
소속			

☐ 소 지 품

품	명	수	량	비	고

☐ 인수경위

일시·장소			
인계자	소속 :	계급 :	성명 :

위와 같이 사체와 소지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인 수 자 : 성 명 ①

○○○수사단(대)장 귀하

○ ○ ○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처

제 목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였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소	속			
	직 위 (직 급)				
죄		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비 고	
-----	--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 명

출석요구서

제 0000-00000 호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접수번호: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0000.00.00. 00:00에 수사부서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 구비서류 등 >

- 1.
- 2.
- 3.
- 4.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위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 수사대(☎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①

출석요구서(참고인 등)

제 0000-00000 호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피의/입건전조사 사건(접수번호:0000-00000)의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0000.00.00. 00:00에 수사부서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 구비서류 등 >

1.

2.

3.

4.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증거자료 등 위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소속 수사대(☎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①

임의동행 동의서

동 행 을 요 구 한 일 시 • 장 소	일 시 : 장 소 :	
동 행 할 장 소		
동 행 의 이 유 (사 건 개 요)		
동 행 대 상 자	성 명 :	
담 당 수 사 관	일 시 : 장 소 :	성 명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위 본인 성 명 ①

조사연장 요청서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거	
비고		※ 요청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

요청인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의 열람을 위해 요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조사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0000. 00. 00.

요청인성명인

동석신청서[피(혐)의자]

수신 :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귀 부대 제 0000-00000호 피(혐)의자 000외 0명에 대한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피(혐)의자 000을/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혐)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생년월일	
	계급·군번(순번)	
	소속	
신뢰관계자	성명	
	생년월일	
	계급·군번(순번) (직업)	
	주거 (사무소)	
	연락처	
	피(혐)의자와의 관계	
동석필요사유		

※ 소명자료 별첨

0000. 00. 00.

신청인성명인

동석신청서(사건 관계인)

수 신 :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귀 부대 제 0000-00000호 피(혐)의자 000외 0명에 대한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고발인/참고인/피해자) 000을/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건관계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사 건 관 계 인	성 명	
	생 년 월 일	
	계급·군번(순번) (직 업)	
	소 속	
	주 거	
	전 화 번 호	
신뢰관계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계급·군번(순번) (직 업)	
	주 거 (사 무 소)	
	연 락 처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동 석 필 요 사 유		

※ 소명자료 별첨

0000. 00. 00.

신청인 성 명 인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에서 군사법경찰관 (계급 000)은(는) 군사법경찰관/리 (계급 000)을(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를 말하시오.

답 성명은 (한자)

주민등록번호는 (나이)

계급과 군번은

소속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직장전화 :

전자우편(E-mail) :

입니다.

군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23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자필 /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자필 /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자필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에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신문조서(0회)

피 의 자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 (적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에서 군사법경찰관 (계급 000)은(는) 군사법경찰관 (계급 000)을(를)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게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자필 / 기명날인 또는 인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자필 /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자필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에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성 명 인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인

진술조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락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피의자 (성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소속관서명 부서명)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위하여 진술인 ()을(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답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성명 인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명 인

진술조서 (제0회)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성 명 인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위의 사람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임의 출석하였는 바,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을(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

답 :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0000. 00. 00. 군사법경찰관 (직위 성명)는(은) (조사대상자성명)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자 ()(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성 명 ㉠ 군사법경찰관 : 성 명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
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성 명 ①인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①인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인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미작성)

대상자	성명		사건관련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주소)		군번/계급(순번)	

구분	내용
1. 조사장소 도착시각	
2.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3. 조서 미작성 이유	
4.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5. 참여 변호인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0000. 00. 00.	
군사법경찰관 (직위 성명)는(은) (조사대상자 성명)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자 ()(으)로부터 확인받음	
확인자 : 성명 (인)	
군사법경찰관 : 성명 (인)	

실황조사서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0000.00.00. 000위 0명에 대한 적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황을 조사하다.

실황조사일시·장소	
실황조사목적	
참여인	
실황조사경위 및 결과	

이 실황조사는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명 (인)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감정위촉서**

피의자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감 정 대 상 (종류·품명)	
위 촉 사 항	
비 고	※ 감정처분허가장이 첨부된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영상녹화동의서

진 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 급 / 군 번 (순번)	
	주 소			

위 본인은 (죄명 피의사건)의 참고인, 피해자(으)로 진술함에 있어 진술 과정이 영상녹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됨을 고지받았음은 물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확인자 성 명 인

○○○수사단(대)장 귀하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0000-0000호

20년월일

수 신 : ○○○ 검찰부장발 신 : ○○○ 수사단(대)

제 목 : 체포영장 신청군사법경찰관(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게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대하여 구금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
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 군번(순번)	
	주거	
번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 검찰부

제0000-0000호

20년월일

수 신 : ()군사법원

제 목 : 체포영장 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성명인

기각취지 및 이유	
-----------	--

긴급체포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 군번(순번)	
	주거	
번호		인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0000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성명인

체포한일시	년월일시분
체포한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일시	년월일시분
인치한장소	
구금한일시	년월일시분
구금한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석방사항

석방한일시	년월일시분
석방한장소	
석방사유	[] 구석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불요
	[] 기타 ()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긴 급 체 포 한 자 의 관 직 및 계 급 · 성 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급 한 일 시					
구 급 한 장 소					
범 죄 사 실					
소 명 자 료					
긴 급 체 포 한 사유					
체 포 를 계 속 하 여 야 할 사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사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석방보고(긴급체포 불승인)

다음 피체포자를 긴급체포 불승인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첨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피 체 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긴 급 체 포 한 사유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현행범인 체포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 급 / 군 번 (순 번)		
	주	거	
변	호	인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①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구 금 을 집 행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현행범인 인수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 급 / 군 번 (순 번)		
	주	거	
변	호	인	

「군사법원법」 제249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①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인 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수 한 장 소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체포자(현행범인)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군	번	(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 : ○○○ 검찰부장

제 목 : 석방 보고서(현행범인)

다음 피체포자(현행범인)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군	번	(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구 0000-0000 호
형 0000-0000 호

20 . . .

수 신: ○○○ 검찰부장 발 신: ○○○ 수사단(대)

제 목: **구속영장 신청(미체포)** 군사법경찰: 성 명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와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검찰부

제 0000-0000 호
수 신: ○○○군사법원

20 . . .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성 명 ㉠

기각취지 및 이유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구 0000-0000 호
형 0000-0000 호

20 . . .

수 신: ○○○ 검찰부장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구속영장 신청(체포영장)** 군사법경찰: 성 명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그를 (구속장소명)에 구속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체포영장 첨부)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변 호 인					
체 포 한 일 시 · 장 소					
인 치 한 일 시 ·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장 소					
범 죄 사 실 및 구 속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와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 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 명 및 연 락 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검찰부

제 0000-0000 호
수 신: ○○○군사법원

20 . . .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성 명 ㉠

기각취지 및 이유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구 0000-0000 호
형 0000-0000 호

20

수 신: ○○○ 검찰부장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바, 그를
(구속장소명)에 구속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긴급체포서 첨부)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세)	군번 (순 번)	
	소속			
	주거			
번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 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검찰부

제 0000-0000 호
수 신: ○○○군사법원

20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성명 인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구 0000-0000 호
형 0000-0000 호

20

수 신: ○○○ 검찰부장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구속영장 신청(현행범인)** 군사법경찰: 성명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그를 (구속장소명)에 구속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현행범인체포서/인수서 첨부)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순 번)	
	소속			
	주거			
번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 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검찰부

제 호
수 신: ○○○군사법원

20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성명 인

권리 고지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 군번 (순번)	
소속	
주소	

본인은 0000.00.00. 00:00경 체포장소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
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
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위 확인인 성명 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
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0000. 00. 00.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000 귀하

제 목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

1. 피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계급 / 군번 (순번) :

2. 위 사람을 0000.00.00. (직명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인치구
금장소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
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면회는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00:00 ~ 00:00어간 실시합니다.
(단, 토요일은 00:00 ~ 00:00에 한하며, 면회횟수는 1일 0회 0분)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끝.

담당수사관	군사법경찰관 0 0 0 (㉸ -)	교도담당관	() 군사경찰대 () 과 군사경찰 0 0 0 (㉸ -)
-------	-------------------------	-------	--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영장반환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영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직 업)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집 행 불 능 의 사 유			

별 침 : ()영장 ()통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제 목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견 등 금지를 결정합니다.

[대상사건]

사 건 번 호 :

죄 명 :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소 속 (직 업) :

체 포 · 구 속 일 자 :

접 견 등 금 지 기 간 : 0000. 00. 00. ~ 0000. 00. 00. (일)

[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제 목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견 등 금지 조치를 취소합니다.

[대상사건]

사 건 번 호 :

죄 명 :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소 속 (직 업) :

체 포 · 구 속 일 자 :

접 견 등 금 지 기 간 : 0000. 00. 00. ~ 0000. 00. 00. (일)

[취소 대상 ‘접견 등 금지 조치’ 내용]

[취소 사유]

피 의 자 석 방 서 (체 포 영 장)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체포자(체포영장)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군	번	(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체포영장번호 등 기타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피의자 석방서(긴급체포)

제 0000-00000 호0000.00.00.

다음 피체포자(긴급체포)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체포자	성명		생년월일	
	계급		군번(순번)	
	소속			
	주거			
죄명				
긴급체포한일시				
긴급체포한장소				
긴급체포의사유				
석방일시				
석방장소				
석방사유				
석방한자의관직및성명				
비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성명인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0000-00000 호0000.00.00.

수신 : ○○○ 검찰부장

제목 : 석방 통보서(체포영장)

다음 피체포자(체포영장)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체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순번)	
	소속			
	주거			
죄명				
체포한일시				
체포한장소				
체포의사유				
석방일시				
석방장소				
석방사유				
석방한자의관직및성명				
체포영장번호 등 기타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성명인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 :

제 목 : **석방 보고서(긴급체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피체포자(긴급체포)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피체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순번)	
	소속			
	주거			
죄명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석방 일시				
석방 장소				
석방 사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비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 : ○○○ 검찰부장

제 목 :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려 하니 구속취소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영장번호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순번)	
	소속			
	주거			
죄명				
구속 일시				
구속 장소				
구속 사유				
구취소사유				
비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

구속취소결정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구 취 소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사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

제 목 : **석방 통보서(구속취소)**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구 취 소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 속 집 행 정 지 결 정 서

제 0000-00000 호0000.00.00.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아래와 같이 정지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		행	정	지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제		한	주	거	등
석		방	한	자	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성 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구속집행정지 통보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아래와 같이 정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		행	정	지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한	자	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성 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 속 집 행 정 지 취 소 결 정 서

제 0000-00000 호0000.00.00.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 행 정 지 결 정 일				
취 소 사 유				
영 장 번 호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성 명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발 신 :○○○ 수사단(대)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전)**군사법경찰관성 명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하오니 000 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 체 검 사 를 받 을 자 의 성 별 , 건 강 상 태				

○○○ 검찰부

년 월 일

제 0000-00000 호

수 신 : ○○○군사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타당하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성 명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발 신 : ○○○ 수사단(대)

신청(사후) 군사법경찰관 성 명 ㉠

다음 사람에게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수색·검증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자의 관 직 · 성 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 건

긴 급 압 수 한 물 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색·검증을 한 사유

체 포 한 일시 및 장 소 (「군사법원법」 제256조 제2항 에 따 른 경 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취 지 와 사 유

신 체 검 사 를 받 을 자 의 성 별 , 건 강 상 태

○○○ 검찰부

년 월 일

제 0000-00000 호

수 신 : ○○○ 군사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타당하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성 명 ㉠

기각 취지 및 이유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금융계좌추적용) 발 신 :○○○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다음 사람에게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변 호 인

대 상 계 작

개 설 은 행 · 계 좌 번 호

거 래 기 간

거 래 정 보 등 의 내 용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필요로 하는 사유

7 일 을 넘 는 유효기 간 을 필요로 하는 취 지 와 사 유

수 통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검찰부

년 월 일

제 0000-00000 호

수 신 : ○○○ 군사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타당하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성 명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앞쪽)

압 수 조 서

000의 0명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압수장소)에서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군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증 제 번 호	물건명	특기 사항				비고	
	수량 등						
		압수 이유	물 수 대 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 물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거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거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요구							

(뒤쪽)

	수량 등					
		압수 이유	물 수 대 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 물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거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거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요구						
참여인(「군사법원법」 제164조 및 제165조)	성명		생년월일			
	주거		전화번호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군사법원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5조 제2항(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5조 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6조 제1항(긴급체포 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7조(유류물·임의 제출물의 압수)					
	[] 기타()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인

참 여 인 성 명 인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 량	소 지 자 또는 제 출 자		소 유 자		군사경찰 의견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압수목록 교부서

(피(혐)의자)에 대한 (피(혐)의사건)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압 수 목 록

연번	품 종	수 량	단 위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전자정보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피압수자 ○○○에 대한 ○○○○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였으므로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수 색 조 서

○○○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군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참 여 인				
수 색 한 신 체 개 소 · 물 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참 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 군 번)	주 소 (소 속)	서명 또는 날인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인

수 색 증 명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0000 귀하

0000의 0명예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수색장소)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0000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0000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0000 검찰부장

제 목 :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

0000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가환부 동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피압수자	환부·가환부 받을사람	비 고

0000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압 수 물 환 부 · 가 환 부 청 구 서

[청 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귀 관서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다음 압수물건을 청구인에게 환부·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청 구 인 : 성 명 ㉠

피 의 자								
죄 명								
압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연 번	품 종				수 량		비고	

○○○수 사 단(대) 장 귀 하

압 수 물 환 부 · 가 환 부 영 수 중

[영 수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귀 관서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다음 압수물건을 환부·가환부 받았습니다.

0000. 00. 00.

영 수 인 : 성 명 ㉠

피 의 자							
죄 명							
압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기록면수	연 번	품 종			수 량	비고	

○○○수 사 단(대) 장 귀 하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바,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사유로 위탁보관의 필요가 있어 동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단 위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①

압 수 물 보 관 서 약 서

[서 약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0000. 00. 00.

서 약 인 : 성 명 ①

피 의 자					
죄 명					
압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연 번	품 종		수 량	비고	

○○○수 사 단(대) 장 귀 하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 : ○○○ 검찰부장

제목 :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바, 위험발생의 염려로 인해 폐기 처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종	수량	단위	비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압수물 폐기 조서

○○○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군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호	품종	수량	이유	비고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군사법경찰관/리 성명 (인)

압 수 물 폐 기 동 의 서

[동 의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계급 / 군번 (순번)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을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동 의 인 : 성 명 ㉠

피 의 자					
죄 명					
압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연 번	품 종		수 량	비고	

○○○수 사 단(대) 장 귀 하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바, 부패(멸실)의 우려로 인
해 대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단 위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압 수 물 대 가 보 관 조 서

○○○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군사법 경찰관/리 (계급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보관하다.

대가보관금액				보 관 자	
번호	품 종	수 량	매각대금	이 유	매수자

0000. 00. 00.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인)

군사법경찰관/리 (인)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증거보전 신청서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 거 보 전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증인신문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증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 인 신 문 청 구 의 요 건 이 되 는 사 실				
변 호 인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감정유치장 신청서**

피의자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고자 하오
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 정 인	성 명			
	직 업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검찰부장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피의자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0000.00.00.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 급		군 번 (순 번)	
	소 속			
	주 거			
감 정 위 측 연 월 일				
감 정 위 측 사 항				
감 정 장 소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감 정 에 필 요 한 처 분 의 이 유				
변 호 인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관서장

제 목 : **사건이송서**

다음 사건을 이송합니다.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사 건 개 요			
송 부 내 역	서 류		
	증 거 품		수 량
이 송 사 유			
기 타 참 고 사 항			
범 죄 통 계 원 표		발 생	피 의 자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수사단(대)
(전화번호)

0000.00.00.

수신 : ○○○ 검찰부장

제 목 : **송치 의견서(기소)**

1. 피의자

성명 : (세)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계급 : 군번(순번):

주거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조치 및 의견

○○○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수사단(대)
(전화번호)

0000.00.00.

수신 : ○○○ 검찰부장

제 목 : **송치 의견서(불기소)**

1. 피의자

성명 : (세)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계급 : 군번(순번):

주거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인정되는 사실과 이유

4. 적용법조

5. 조치 및 의견

○○○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앞쪽)

압 수 물 총 목 록

번 호	품 종	수 량	기 록 면 수	비 고

(뒤쪽)

번 호	품 종	수 량	기 록 면 수	비 고

(앞쪽)

기 록 목 록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보통 검찰부	사 건 과 장	20 년 월 일	검 찰 부 장	검 찰 단 장
		형 제	호		

○○○수사단(대)

제 - 호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인 적 사 항	수사자료카드	
	일 자	번 호

죄 명	
수사단서	
접 수	
구속관계	
의 견	
증 거 물	
비 고	

○○○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직인)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추가송부**

다음과 같이 추가 송부합니다.

사 건 명	
피 의 자	
송 치 연 월 일	
추가송부서류 및 증 거 물	
비 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직인)

○○○수사단(대)
(전 화 번 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 검찰부장

제 목 : **보완수사 결과 통보**

「군사법원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 급 / 군 번 (순 번)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내 용				
이 행 결 과 (불이행시 사유 기재)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성 명 ①